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가단5142960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고A 유한회사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카이로스

담당변호사 장석철

변론 종결2021. 4. 23.

판결 선고2021. 5. 28.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피고들과 D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5. 12. 7.자(2020. 8.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2015. 11. 18.'은 오기로 보인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29,647,16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에게 피고 B는 15,430,567원, 피고 C는 14,243,6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이 유

###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소538707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7. 26. 위 법원으로부터 'D는 원고에게 13,940,601원 및 그 중 8,425,774원에 대하여 2011.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대하여 D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D의 아버지인 E은 2015. 11. 18. 사망하였는데,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D, F, 피고 C가 있었다.

다. 피고들과 D, F는 2015. 12. 7.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가 52/100 지분, 피고 C가 48/100 지분을 취득하고 D, F는 상속받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그 후 피고들은 2015. 12.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D는 2016. 2. 1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느단17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2016. 2. 18. 위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D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들에게 이전하는 취지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원물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졌으므로, 피고들은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이는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이는 설사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이에 참여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가 그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서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다.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D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에 참여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약의 내용은 D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 D에게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그 후 D의 상속포기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됨에 따라 망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2015. 11. 18.로 소급하여 상속포기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D에 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의 실질은 그의 상속포기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상속포기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잘못된 전제에 선 것으로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대원**

별지